

제 303회 시의회 정례회
행정 자 치 위 원 회

2021. 11. 22 (월)



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

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

2021. 11.

재 무 국

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 판결금 지급 예비비 사용 보고

우리시를 상대로 제기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을 수용함에 따라 예비비를 사용하여 판결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 보고드립니다

사용현황

- 사용금액 : 140,479,752원(원금 121,952,930원, 이자 18,526,822원)

(단위:천원)

부서명	예산과목		예산액	금회 지출액		승인일자
	세부사업	통계목		증	감	
예산담당관	예비비	일반예비비 (801-01)	83,626,043	-	△140,480	'21.8.13
38세금징수과	고액 체납시세 징수	배상금 등 (305-01)		140,480	-	

사용이유

- 압류재산 공매와 관련하여 우리시를 상대로 제기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('20.11.30.)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내용을 수용하고 판결금 1억 4천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예비비 사용하였음

【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송 개요】

- 사 건 명 :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601928 부당이득금
- 청구내용 : 원고는 우리시가 압류 및 공매한 집합건물 부속토지를 낙찰받았으나 집합건물의 대지지분 일부 취득은 원인무효에 해당하여 공매로 인한 소유권 취득 자체가 무효가 됨에 따라 우리시가 교부받은 배당금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함.
- 당 사 자 : 원고 신○○, 피고 서울특별시 외 3
- 판 결 금 : 140,479,752원

소송개요

- 사건명 :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601928 부당이득금
- 당사자 : 원고(신00), 피고(서울시, 강북구, 국민건강보험공단, 한국자산관리공사)
- 소송가액 : 256,659,618원(우리시 134,382,210원)
- 사건개요
 - 원고는 우리시가 압류 및 공매한 집합건물 부속 토지를 낙찰 받았으나 집합건물의 대지지분 일부 취득은 원인무효에 해당하여 공매로 인한 소유권 취득 자체가 무효가 됨에 따라 우리시가 교부받은 배당금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
- 판결요지
 - 원인무효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한 공매는 당연무효로 부당이득금 반환의 대상
 - 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권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 따라 집합건물의 대지는 그 지분만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매는 무효임.
 - ② 공매가 무효이므로 우리시가 교부받은 배당금은 부당이득금에 해당
 - ③ 원고가 토지의 권리제한을 알고도 취득한 악의임을 입증할 증거가 없음
 - ④ 체납처분비 12,429,280원은 공매과정 진행에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법률상 원인이 없다거나, 서울시가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.

 소송진행 경과

- 2020.11.30. : 소송 제기
- 2021. 6.16. : 변론진행(1회)
- 2021. 7.14. : 1심 판결(원고일부승, 배당금만 부당이득금에 해당)
- 2021. 7.29. : 상소장 제출(원고 패소 부분, 체납처분비도 부당이득이라 주장)
- 2021.10.29. : 우리시 답변서 제출(2심 진행 중)